

83 OCT -2 15 38

증산 수출 건설

관 인 생 후

총 무 처

인제 250-3196 (72-8402) 1969. 10. 2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공무원제수양 지급규정 운영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1. 공무원 제수양 지급규정 운영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무부장관과의 질의 조북이 있었기 알려드리니 앞으로 제수양 지급규정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이미 통보된 종인제 252-1396

(1954. 4. 7) '공무원 제수양 지급규정 운영에 대한 통첩'은 1969. 10. 2자로 폐지함

무	장소	시공도면지	기타
		130.02	
인	번호	101	
		승공없이 자유업고 3/장급없이 평화업고	
인	번호	101	월 연

연정 250-3169

1969. 10. 20.

나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질의조복문 비용 1부. 끝

총 무 처 장 관

수신처: 가 나 (1) 법원행정처,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재 무 부

④ 사

총무 252-2164

1989. 9. 11

수신 총무처 장관

제목 공무원제수령 지급조정 운영에 대한 질의

1.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나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공무원이 파면처분 되었으니 법원 판결에 의하여 등 파면처분 원자로 소급하여 취소 되었을 경우 파면처분일로 부터 취소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등 공무원이 4급이하의 공무원인 경우 월 1,000 원의 특수근무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끝

재 무 부 장 관

총 무 처

①

안제 250-3196

(72-8402)

1969. 10. 2

수신 재무부장관

제목 공무원 채수당 지급규정 운영에 대한 질의 "회신"

1. 총무 252-2164 (1969. 9. 11) 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파면처분 되었던 공무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동 파면처분이 소급하여 취소되었을 경우 파면처분 원로부터 취소한 말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채수당 지급규정 제 18 조의 6에 규정된 4급이하 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우 )

각종 특수근무수당은 봉급과는 달리 공무원보수규정 제 33 조의 4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그러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3)

(4)

인제 250-2/96

1969. 10. 2

3. 이미 통보된 종인제 252-1396 (1965. 4. 7) "공무원제수당지급규정 운영에 대한 통첩"은 1969. 10. 2자로 폐차하오니 양지하시키 바랍니다. 끝.

총 무 처 장 관

要旨

외변 처벌된지가 개정 조항 별기 외변 처벌 최초  
연도가 확정된 외변 처벌을 동일로 최소한 경우

외변 처벌되었는 기간은 이를 슬롯 (근축비용리감소)의  
기간에 산입 할수 있음.

공감 보양제  